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제1호 결성·운영에 따른

# 업 무 협 약 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위탁기관, 이하 “추진단”이라 한다)과 한국콘텐츠진흥원(수탁기관,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협력할 것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제1호)(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위탁·수탁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동법 제15조의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투자조합’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한 금삼십팔억사천만원(₩3,840,000,000) 및 일반투자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 ② ‘위탁’이라 함은 추진단장의 권한 중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을 진흥원장에게 맡겨 진흥원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및 책임관리)

- ① 추진단이 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출자금 관리·운영
  2. 업무집행조합원(창업투자회사)의 선정·출자·회수 및 조합재산의 배분
  3. 투자조합 운영에 관한 법령 및 계약내용 준수 여부 감독
  4. 투자조합 운영 성과 평가 및 투자 의무 실행 여부 감독
  5. 투자조합 투자대상 업체 및 관련제품의 육성·지원

- 6. 투자심사(투자심의위원회 참석) 등 조합의 결성 시부터 운영 및 해산(투자금액 회수 포함)시까지 수행하는 투자조합 관련 업무 일체
- ② 상기 제①항에 의거 투자조합 관리책임은 진흥원이 담당한다.

제4조(투자대상)

- ① 투자조합 투자누계액의 5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 분야에 투자하고 그 밖에 문화산업 등에 투자한다.
- ② 투자조합의 출자 분야 및 주목적 투자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분 야	주목적 투자대상
문화산업 (CG·3D, 애니메이션·캐릭터, 게임 등)	1.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 및 프로젝트로써 광주지역에서 소비되는 제작비용이 당해 투자조합의 투자금 대비 80% 이상인 콘텐츠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등	2. 아특별에 의해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내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3.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 개발,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특별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관리자의 의무 및 상호협조)

- ① 진흥원은 투자조합 운영에 있어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진단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보고)

- ① 진흥원은 조합규약에 명시된 조합운영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정기보고'라 함은 투자조합 규약에 명시된 '반기보고'와 '결산보고'를 말하며, '수시보고'는 추진단이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및 업무집행조합원이 분기별 또는 수시로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업무집행 점검 등)

- ① 추진단은 투자내역 등 투자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위탁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추진단은 상기 제①항에 의거, 조합운영과 관련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업무의 해태 등으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손실방지)

- ① 진흥원은 추진단이 출자한 자금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이 본 협약과 근거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과 관련 업무대행수수료)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수수료는 조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정경비 등으로써 추진단은 진흥원에 본 협약 제2조제①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조합 납입출자금 총액의 년 100분의 2의 범위내로 하되 지급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운영협약의 기간 및 효력)

- ①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며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조합존속 기간 동안 협약이 유지 된다. 단, 조합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 제7조제②항 이외의 사유로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추진단과 진흥원은 각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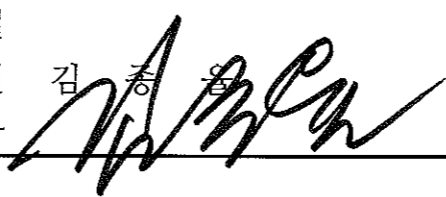
2012. 5. 4.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 광 식

전결  
추진  
단장



<수탁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 상 표

